

설비건설업 노무관리 상담 사례 ⑬

신흥식 /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 ·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고문 노무사

1. 시공참여자의 산재보상 대상여부

Q 시공참여계약을 통해 노임공사를 행하는 시공 참여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공참여자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A 산재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준용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

율을 적용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7.12. 2001도5995 판결, 2001.4.13. 2000도49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속칭 오야지, 작업반장 등으로 불리는 시공참

여자의 경우 시공참여계약의 내용과 실태에 따라 근로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공참여자가 위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고 그들에 대한 노임 및 식대, 장비사용료 등을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일괄 지급받아 분배하였으며, 공사 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해 시공참여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한 점에 비추어 하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노무도급계약에 불과한 경우 시공참여자가 위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충원하여 그들의 노임과 식대 및 장비사용료 등을 일괄 지급받아 분배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시공참여자에게 노임상당의 수입을 초과하여 이득을 취한 바도 아니며, 또한 그 작업에 대하여 시공자와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시공참여자는 시공자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의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산재보상 대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사례(2004.9.24 대법 2003누18646 요양불승 인처분취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참여자 내지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에서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인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Q 회사에서 현장 부근에 숙소와 식당을 지정하여 일용 근로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특정 인부의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토록 해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상태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이동(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A 근로자의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재보상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9.12.24. 99두9025, 대법원 1993.9.14. 93누5970 등)

건설현장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장과는 달리 출·퇴근에 있어서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특정 근로자의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하고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으로 취급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명의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들이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회사가 지정한 식당에 들러 아침식사를 마친 후 현장사무실로 출근,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출근경로를 이용하여왔고, 회사에서 위와 같은 출·퇴근방법을 묵인하고 망인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오토바이 수리비를 부담하여온 사실,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사실, 숙소 및 식사장소를 지정하고 그 숙식비용을 직접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이 출근에 앞서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하여 이동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지배·관리권이 미

치는 영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망인들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2004.4.23 대법 2004두121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가 있습니다.

반면, 건설현장 건축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회사가 자가운전자의 차량을 일과 시간 중 업무용으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공용차량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 자가운전자의 직접 운전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가운전자 유류 및 관리비 지급지침에 따라 망인과 같이 자가용차량을 소유한 현장직원에게는 차량일지나 유류사용대장 등을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류를 제한 없이 지급하여 온 사실, 한편 망인은 공사현장의 간이숙소가 비좁아 같은 현장의 동료 직원의 집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었고, 사고 전날 소위 회사에서 마련한 저녁회식에 참석한 후 새벽에 숙소로 돌아갔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나, 망인은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망인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망인의 통근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이 망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1997.11.14. 대법 97누 13009)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각기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임의 선택가능성 여부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 포함 여부에 대한 시각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 켜놓고 자면 암에 걸린다?

불을 켜놓고 자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안과 의사인 퀴(Graham Quinn) 박사가 479명의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습관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잠을 잔 어린이들은 10명 가운데 1명만이 근시였지만 잠잘 때 야간등을 켜놓고 잔 아이들은 3명 중 1명꼴로 근시였다.

코네티컷대학의 스티븐스(Richard Stevens) 박사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불을 켜놓고 자면 암 발생률도 부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사흘 이상 야근하며 30년간 직장 생활을 해온 여성들은 유방암

발생률이 40%나 높았다. 왜 그럴까? 잠을 잘 때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켜놓고 자면, 멜라토닌(melatonin)의 분비가 중단된다.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은 잠을 잘 때 뇌의 중심부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노화를 막아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병균의 침투를 막아주는 일도 한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잠을 설치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진다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걸리기 쉽고, 암세포가 생길 위험성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